

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—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건강과, 보람있는 노후생활 창조 및 여가 공간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신설
-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과 6급 정원 책정비율확대 및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
-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「도시 보건지소」운영 시범자치단체 선정으로 인동보건지소를 도시보건지소로 전환

3. 주요내용

- 사업소신설 :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
- 민 간 위 탁 : 근로자종합복지회관
- 도시보건지소
 - 명 칭 : 인동보건지소
 - 소 재 지 : 구미시 진평동 985-35번지
 - 존속기간 :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
- 정원의 총수 : 1,445명 → 1,478명(+33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20명 → 1,453명(+33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5명(변동없음)

4. 참고사항

- 경북도 자치행정과-3787(2005.4.26)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
- 경북도 자치행정과 - 5395('05.6.23)호의 구미시 기구 및 정원 승인
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- 2041(2005. 8.19)호의 「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」운영인력 보강지침
- 경북도 자치행정과-7608('04.10.1)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
- 지역보건법 제10조(보건지소의 설치) 및 동법시행령제8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신설, 인동보건지소의 한시정원 승인,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,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민간위탁,지방자치 단체의 6급 정원책정 비율 확대 등에 따른 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.